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20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정을호·차지호·손명수
한민수·윤종균·위성곤
권칠승·이기현·문정복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를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 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 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 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u>요구할 수 있다.</u>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 에 대한 조치요구) ----- ----- ----- ----- ----- ----- ----- ----- ----- ----- ----- <u>요구하여야 한다.</u>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 령을 회피한 증인, <u>보고 또는</u> <u>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u>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 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 ----- ----- ----- <u>보고 또는</u> <u>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u> <u>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u> <u>제출한 자,</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